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 사업 지원 포함 >

■ 김건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91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 사업 지원 포함 (안 제13조제3항제6호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건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2025. 6. 13.

다. 회 부 일: 2025. 6.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우수 한국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번역 및 출판, 해외 진출 등 한국문학의 현대화 및 세계화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한국문학의 번역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한국문학과 관련된 사업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최근 한류의 세계적 확산 추세 속에서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제6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기술 관련 사업 포함

(안 제13조제3항제6호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에 한국문학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업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제6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② (생략) ③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④ ~ ⑦ (생략)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u>한국문학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사업 지원</u>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13조는 한국문학의 체계적인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를 위해 한국문학번역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서, 한국문학의 번역·출판, 번역가 양성,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연구, 해외 교류 및 진출 지원, 외국문학의 한국어 번역·출판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¹⁾.
- 최근 한류의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한국문학에 대한 해외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문학의 번역과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문학 번역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언어권에 한국문학을 빠르게 보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 1) 「문학진흥법」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한국문학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문학의 번역·출판 사업
2.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 사업
3. 한국문학의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연구 사업
4.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5. 문학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문학의 한국어 번역·출판 사업
6.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④ 제3항제1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한국문학번역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 국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한국문학번역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⑦ 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이에 개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한국문학 관련 사업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한국문학의 세계화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조문에 사용된 ‘한국문학과 관련된’이라는 표현이 그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어서 한국문학번역원의 기능이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한국문학 번역 관련 사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문학 번역의 특성상 인공지능 번역의 한계를 간과할 경우 번역품질이 저하되고 인간 번역가의 창의적 번역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은 인공지능 번역 기술의 활용뿐만 아니라 번역윤리 확립 및 창의적 번역역량 강화 교육 등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84